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3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박희승 · 문금주
이재관 · 임미애 · 문대림
김의겸 · 서영석 · 홍기원
양부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농지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는 해당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 보조 및 용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 및 농지 매입 사업 등 법적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「농지법」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이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「농지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용자를 신설하여 기

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공사의 사업 시행 시 적용 배제되는 「농지법」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농지 관리 및 매입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및 제42조).

법률 제 호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「농지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

제42조 중 “「농지법」 제9조 및 제25조는”을 “「농지법」 제9조·제24조의2 및 제25조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. 1. ~ 7. (생략) <u><신 설></u> 8. ~ 13. (생략) ② · ③ (생 략)	제34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7의2. 「농지법」 제11조제2항</u> <u>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</u> <u>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</u> <u>조 및 융자</u> 8. ~ 13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42조(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)공 사가 제18조 · 제19조 · 제24조 의2 · 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<u>「농지법」 제9조 및</u> <u>제25조는</u> 적용하지 아니한다.	제42조(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)-- ----- ----- ----- <u>「농지법」 제9조 ·</u> <u>제24조의2 및 제25조는</u> ----- -----.